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-5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 회피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, 위원회 존속기한을 명문화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관리상 효율성 증대 및 성별 관련 근거 법규 구체화(안 제9조)
- 나. 위원의 회피규정 의무화(안 제11조)
- 다.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한 구의회 보고 명문화(안 제14조)
- 라. 위원회 존속기한 명문화(안 제15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
- 2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5. 4. 17.~5. 7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해당 없음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같은 사람이”를 “위원 1명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본문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위촉 후에는 그 명단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회피할 수 있다”를 “회피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 운영 현황을 작성하고 매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

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
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
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
외로 한다.

⑤·⑥ (생략)

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·② (생략)

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
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
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
수 있다.

제14조(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)

①·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 . -----

----- .

⑥·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
같음)

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회피하
여야 한다.

제14조(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비
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
여 위원회 운영 현황을 작성하
고 매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① 구

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해
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
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.
다만, 다른 법령에서 설치하도
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
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
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 이

제15조 · 제16조 (생략)

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제16조 · 제17조 (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 일부개정안은 현행 상위법령의 근거 명시 및 위원회 관리상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안의 시행에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새마포담당관 안민환
연 락 처	02-3153-8514